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46	14,250
여성정책추진사업	5	522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33	10,804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8	2,924

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385,075	620	1

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

❖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 액		620	
안전건설과	시목마을안길 확장공사	50	
"	관변마을 인도설치공사	50	
"	하정농로 확포장사업	50	
"	산두 배나무골 농로포장공사	50	
"	옥동 안평마을 양과 야적시설 설치공사	50	
"	분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	25	
"	용수막 농로 포장공사	25	
"	지곡면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	50	
"	이전마을 삼우지 배수로 정비사업	40	
"	죽당마을 용·배수로 정비사업	30	
"	은행마을 앞들 농로포장공사	25	
"	해평마을 건너들 아스콘 포장공사	25	
"	식송마을 뒷길 농로 정비사업	15	
"	대로마을 뒷들 농로 정비사업	35	
"	운산(상신)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	25	
"	하대평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	25	
"	가촌 농로 포장공사	50	

4-3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부서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 위 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19	92	213	229	378,903	350,200	28,703
의회사무과	1	1	3	2	927	954	-27
기획감사실	1	6	13	8	32,173	17,633	14,539
주민생활지원실	1	11	19	31	63,510	62,192	1,318
행정과	1	7	11	13	58,707	56,544	2,163
재무과	1	3	8	7	2,598	3,877	-1,279
민원과	1	5	12	11	4,193	3,137	1,056
문화관광과	1	5	12	10	21,970	17,997	3,973
산림녹지과	1	5	12	14	25,708	20,785	4,923
경제과	1	6	14	17	9,980	14,926	-4,946
건설교통과	1	4	10	12	40,576	35,488	5,087
안전관리과	1	4	8	15	15,067	19,549	-4,482
도시환경과	1	3	11	12	16,547	14,880	1,666
지역발전과	1	3	10	5	13,075	11,709	1,366
보건소	1	4	13	13	4,518	4,348	171
농축산과	1	5	13	14	17,596	19,413	-1,817
작물지원과	1	6	12	13	15,726	14,500	1,226
농업자원과	1	6	15	16	7,498	9,943	-2,445
상하수도사업소	1	5	9	12	23,778	17,481	6,297
문화시설사업소	1	3	8	4	1,594	1,686	-93
함양읍	0	0	0	0	520	519	1
마천면	0	0	0	0	299	299	0
휴천면	0	0	0	0	242	242	0
유림면	0	0	0	0	245	245	0
수동면	0	0	0	0	248	247	0
지곡면	0	0	0	0	246	245	0
안의면	0	0	0	0	385	385	0
서하면	0	0	0	0	237	237	0
서상면	0	0	0	0	263	263	0
백전면	0	0	0	0	256	255	1
병곡면	0	0	0	0	222	221	0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6.95	63.22	17.75	27.29	54.03	158.69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- ▶ 재정자립도·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전(2013년 이전) 기준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53	50	-3
	부단체장	36	34	-2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27	205	-22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57	53	-4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72	72	-
	의원국외여비	26	26	-
지방보조금		18,244	10,288	-7,956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876	876	-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944	944	-
공무원 일·숙직비		241	241	-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(<http://lofin.moi.go.kr>)

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출 효율화)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출 효율화)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(세출 효율화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6년	2017년
계	2,271	1,879
인건비 절감	0	36
지방의회경비 절감	39	40
업무추진비 절감	21	15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0	-1,319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-163	822
지방청사 관리·운영	2,374	2,285
읍면동 통합운영	0	0
민간위탁금 절감	0	0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 12. 31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4-7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입확충)

- 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입확충)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☐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6년	2017년
계	-8,113	-3,462
지방세 징수율 제고	-74	-369
지방세 체납액 축소	-2,902	-2,671
경상세외수입 확충	82	51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-5,149	-473
탄력세율 적용	-70	0
지방세 감면액 축소	0	0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 12. 31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4-8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☐ 2016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해당사항 없음		

- ▶ 지방채발행 승인(지방재정법 11조, 55조), 투자심사(지방재정법 37조, 55조), 위반, 예산편성 기준(지방재정법 38조) 위반 및 감사원·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

4-9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☐ 2016년에 우리 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증액 사유	평가분야와 성적	지방교부세 증액금액
해당사항 없음		

- ▶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